

안전점검 실태 및 발전방향



박 헌 식

(교육부 교수·부장)

1 머리말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에 제정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함)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매년 특수건물(특수건물의 범위: 본문 2.가. 안전점검 대상 참조)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협”이라 함)의 안전점검은 화재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시설, 즉 발화위험시설·연소방지 및 피난시설·소방시설·방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 방재시설의 안전율(양호율)은 높아지고 특수건물의 손해율은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안전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점차 제한되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와 같은 보험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안전활동의 실효성 저하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화협의 안전점검 실태와 각종 규제에 대응하여 화협의 설립목적인 화재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안전점검 실시 배경

가. 화보법 입법 및 화협의 설립 배경

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은 산업규모가 대형화되고, 건물은 고층화되어 위험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국민의 의·식·주 생활 또한 변화되어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재해의 형태가 60년대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방재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연각호텔, 시민회관 등의 화재발생은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 증진과 재해방지의무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갖게 했다.

*대연각호텔 화재: 1971. 12. 25. 새벽 163명 사망, 63명 부상.

*시민회관 화재: 1972. 12. 2. 사망 53명, 부상 76명.

○선진외국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물건에 대하여 방재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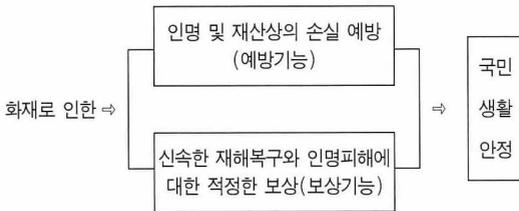
위와 같은 배경에 의하여 화재법(법률 제2482호)의 입법과 더불어 동 법에 의거 손해보험 회사로 하여금 화재예방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선진국 방재활동 체제

정부	• 안전법규의 뒷받침, 화재진화 등 국가차원의 위험관리
보험회사	• 보험가입 물건에 대한 - 위험의 인수 - 위험관리(방재활동) - 이익의 사회환원
기업	• 위험의 전가(보험가입), 자체위험관리(방재활동)

나. 화협의 기능 및 주요업무

(1) 기능



(2) 주요업무

업무를 살펴보면,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화재보험에 있어서 소화 설비에 따른 요율할인 등급의 사정,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행정기관·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기타 방재시험연구소 운영과 국유물건과 방위산업체에 대한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화협의 업무중 가장 중점적인 업무로서 국가 및 손해보험사에 기여하고 있다.

* Individual Risk Management → Social Risk Management로 전환

* 방법 : 보험회사를 통한 방재활동 수행과 의무 보험제도 도입

* 선진국 형태의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제

도 장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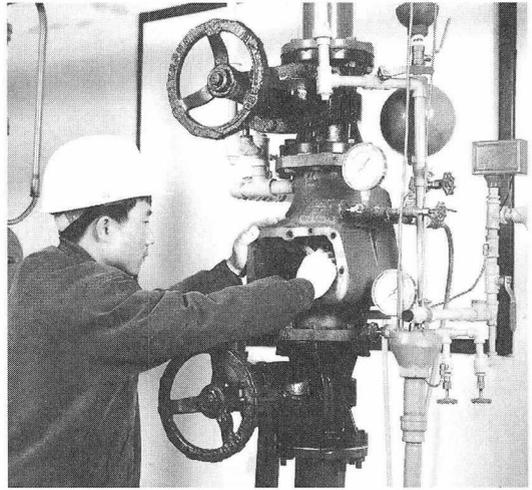
3 안전점검 개황

가.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특수건물은(보험가입 의무화)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는 건물,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성이 큰 건물, 기업의 부실화 또는 도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물, 국가의 주요기관 및 기간산업 시설로서 전국에 소재하는 다음 건물을 말한다.

- (1)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APT,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제외한다.
- (2)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중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 (3)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4)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5)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6) 의료법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다만,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입 물건 제외
- (8) 공중위생법에 규정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9) 공연법에서 규정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10)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국 또는 영화·TV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11)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12)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상이 특수건물 대상이며, 안전점검 대상이다.



나. 특수건물 지역별 분포

(’98. 3. 31 현재)

지역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남·충북	광주·전주·전남·전북·제주	대구·구미·경북	부산·창원·울산·경남	계
대상수	2,323	3,625	1,362	1,059	2,107	2,427	12,903
%	18.0	28.1	10.6	8.2	16.3	18.8	100

다. 특수건물 업종별 분포

(’98. 3. 31 현재)

업종	국유	학원	병원	11층	호텔	공연	방송	유홍	학교	공장	사장	APT	계
대상수	1,399	60	383	974	401	88	57	20	137	7,002	982	1,400	12,903
%	10.8	0.5	3.0	7.5	3.1	0.7	0.4	0.2	1.0	54.3	7.6	10.9	100

라. 점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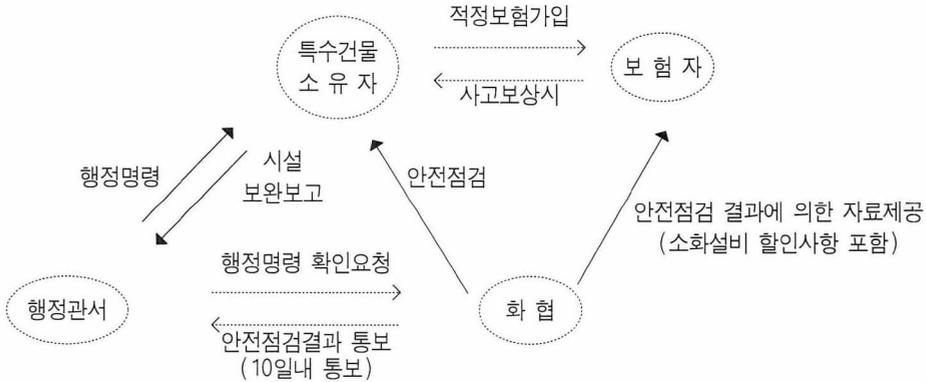
특수건물은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계약 갱신시 마다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 (1) 화재원인별 발화위험
 - 전기시설의 발화위험과 적정성 여부
 - 위험물 및 가연성 가스시설의 위험요인
 - 시설 및 장치의 결함, 취급부주의 등에 따른 위험요인

- (2) 소방시설 전반(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적정성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 (3) 연소확대 방지시설(방화구획 및 방·내화 난연성 등) 적정성 여부
- (4) 기타 방화관리 실태 등을 국내 건축법, 소방법 등 안전관계법과 KFS(Korea Fire Safety Standards), 소화설비할인규정, NFPA기준 및 기술력을 근거로 점검자의 판단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처리 절차



4 안전점검 효과

가. 특수건물 방재활동 개선을 향상

연도별	'76	'80	'85	'90	'92	'94	'95	'96
설치율(%)	73.5	84.9	93.9	93.6	98.4	99.0	99.1	99.4
양호율(%)	27.4	47.4	73.1	74.3	75.2	74.4	74.8	74.9
비 고	• 91년 9월 3일 특수건물 대상이 4층에서 6층으로 조정됨. • 민간 방재기관인 화협이 설립되어 점검업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소방시설 점검에 변화를 주어 발전의 계기가 되었음.							

나. 특수건물과 비특수건물의 손해율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특 수 건 물			비 특 수 건 물		
	보험료	손해액	손해율(%)	보험료	손해액	손해율(%)
'81	21,888	3,010(276)	13.8	35,886	14,208(2,738)	39.6
'85	31,392	9,886(509)	31.5	64,090	27,818(4,543)	43.4
'90	55,982	29,460(818)	52.6	165,483	94,206(4,277)	56.9
'91	55,154	35,954(1,038)	65.2	185,109	95,928(1,817)	51.8
'92	56,450	9,933(520)	17.6	209,692	101,385(1,722)	48.3
'93	51,114	10,669(688)	20.9	239,841	102,040(1,758)	42.5
'94	51,067	19,100(748)	37.4	271,602	121,868(1,957)	44.9
'95	54,957	22,422(1,074)	41.1	304,004	121,043(2,126)	40.8
'96	63,153	26,386(1,037)	41.8	298,241	144,400(2,371)	48.4

※ 자료 : 보험통계연감('81~'90), 보험통계연보('91~'96)
 ※ ()안의 숫자는 손해발생 건수임.

다. 특수건물 보험요율 인하

구 분	1차('81. 7)	2차('84. 1)	보험료 경감
인하율(%)	9.6	11.9	25.5

- '91. 8. 화재보험요율 전체 인하 : 평균 13.3%

라. 담보범위 확대 등

- 풍수재 위험 확대
- 신체손해배상 보험금 인상
 - 사망시 : 50만원→500만원('83)→1,000만원('91)→3,000만원('97)
 - 부상시 : 40만원→400만원('83)→800만원('91)→1,000만원('97)
- 후유장애 보험금 신설('91) : 1,000만원('97)→3,000만원

결과적으로 안전점검 효과로는 상기 가~라에서 나타나듯이 방재활동 개선 등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율이 '81년 특수건물 13.8% 비특수건물 39.6%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수건물에 한해서 보험요율을 1차 81년 7월에 평균 9.6%, '84년 1월에 2차로 11.9% 할인을 하여 '90년~'96년까지 평균손해율이 현격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특수건물 39.51% 비특수건물 47.65%)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많은 보험료 혜택(25.5%)을 받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91년 8월 전체 화재보험 요율을 13.3% 인하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었으며 또한, 담보범위도 같은 보험료로서 “라”항과 같이 확대됨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당면과제

IMF경제하에서 안전문제는 더욱 관심 밖의 일로 분류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각 기업의 환경 안전분야의 조직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담당직원을 가장 먼저 줄이

고 있어 안전분야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가. 소유자 측면

법에 의한 외부의 점검회수가 많아 실무자 입장에서 점검공해(点檢公害)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관(약8개 기관)에서 유료, 무료점검을 하고 있어 불만의 소지가 많다.

나. 행정관청

각 부처별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소유자에게 중복점검으로 민원소지가 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통보를 행정관서의 건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산업과 등에 각 과별로 통보(화보법 시행령 제12조 제⑤항)해야 하므로 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다. 보험회사

안전점검결과는 화재보험 계약업무에 참고자료로 사용되거나 영업경쟁에 의해 점검결과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보험사의 위험관리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안전점검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일부 인력의 중복투자 손실이 예상된다.

라. 화 협

안전점검 결과가 소유자 입장에서 행정명령화를 지양하므로 점검 효력이 적다. 여러 기관의 점검으로 소유자의 관심도가 낮아져 안전점검의 관심도가 적어지고 있다.

소방시설자체점검과 중복 업무가 있어 소유자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

6 발전방향

가. 제도적인 측면

안전점검은 소유자(건물 소유자) 측면에서 이익

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중복점검 등의 여건을 줄여야 한다(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안전업무는 보험에 의해 관리되고 유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점검결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의 영향이 커야 하므로 그러한 함수가 요율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특수건물할인, 소화설비할인, 우량할인 등이 안전점검 결과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점검결과에 의해 적용토록 한다.

- | | |
|----------------|-------------------|
| 개선사항 : ① 요율서개정 | } 각각 할인율
기준 참고 |
| ② 적용기준 설정 | |
| ③ 점검방법 | |

안전점검을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보험컨설팅 차원으로 변화하여 보험사의 활용을 극대화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의 방향은 기능특성상 보험점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를 벗어나도 보험자와 소유자가 필요로 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험료 책정에 중요 요소가 되어 보험자도 그 Data에 의해 영입이 이루어져야 과학적인 보험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에 의한 안전은 보험에 의해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의 대책으로 보험업법에 화보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안전점검의 활용이 커지며 보험의 발전이 될 것으로 본다.

나. 기술적인 측면

안전점검의 적용기준은 국내 안전관계법에 의해

처리하고 참고자료성으로 NFPA 기준, ISO기준을 적용시키나 사실상 특수사정의 특수건물의 적용은 어려움이 많다(예 : 지하공동구, 대형 지하층, 특수 고층건물 등).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는 PBS(Performance Base System)에 의해 방재대책(적응소화설비 및 피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적용이 마땅치않은 범규 적용으로 기능에 맞지 않는 설비구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은 시험연구 및 Simulation에 의한 위험도 측정이 필요하다.

(1) 안전점검 결과의 보험활용은 우리 실정에 맞는 위험도를 개발하고 정량화 하여 Underwriting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Underwriting Survey 기법의 기술발전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안전점검도 변화하여야 발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안전점검의 발전방향은 보험자가 요구하는 DATA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7 맺는 말

화협의 안전점검은 한마디로 안전활동에 경제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인위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와 소유자간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되, 국가 방재를 근간으로 한다. 즉, 소유자와 보험자가 절실히 요구하는 방재기술자료를 다양하게 연구, 개발하여 이를 실무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㉞